

공 고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-228호

신당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(4차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32호(2008. 01. 31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, 주택과-5428(2008. 03. 26)로 조합설립인가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164호(2011. 06. 23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, 중구 고시 제2016-73호(2016. 05. 25)로 정비구역(경미한 변경) 결정, 주택과-28047호(2016. 09. 09)로 사업시행 2차변경 인가, 주택과-40253호(2016. 12. 20)로 사업시행 3차변경 인가된 신당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변경인가(4차) 신청(신당11조합 제2017-25호, 2017. 02. 20)이 있어 인가에 앞서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(4차변경)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2.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와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토지 등 소유자에게 본 공고내용을 개별 통지하고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써 통지를 갈음합니다. 관련도서는 중구청 주택과 및 신당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비치하여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17년 03월 29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가. 공람기간 : 2017. 03. 29. ~ 2017. 04. 13.

나. 공람장소 : 중구청 주택과(☎ 02-3396-5723) 및 조합사무실(☎ 02-2237-4881)

다. 사업시행계획

- 1) 사업명칭 : 신당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2) 위 치 : 중구 신당5동 85번지 일대
- 3) 시행면적 : 8,119㎡
- 4) 시 행 자 : 신당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김거부)
- 5) 시행기간 : 사업시행(변경)인가일로부터 60개월
- 6) 건축계획 : 아파트 3개동 176세대(임대아파트 없음) 및 부대복리시설
- 7) 주요변경내용 : 보행자 주출입구 변경, RC옹벽설치, 흙막이 가시설 공법 및 굴토계획 변경 등

라. 관계도서 : 생략(중구청 주택과 및 조합사무실 비치 도서와 같음)